

# 「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」 규약 보고

의안 번호	157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3. 08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남북9축 고속도로(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~ 경상북도 영천시) 경유 인접 시·군의 상호교류 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고, 공동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립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에 따라 법정 협의회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개요
  - 가. 설립목적: 남북9축 고속도로 경유 인접 시·군의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기여
  - 나. 설립일자: 2023. 7. 31.(초대 회장시군: 정선군, 부회장시군: 봉화군)
  - 다. 회원시·군: 10개 지자체(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, 인제군, 홍천군, 평창군, 정선군, 영월군, 경상북도 봉화군, 영양군, 청송군, 영천시)
- 규약의 주요내용
  - 가. 목적(제1조)
    - 남북9축 고속도로 인접 10개 시·군(양구 ~ 영천)의 상호교류 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현안사업을

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.

#### 나. 기능(제2조)

- 자치단체 간 공동관심사인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 및 공동협력 방안
- 시·군정 각 분야별 시책의 공조
- 기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

#### 다. 임원(제4조)

- 회장 및 부회장은 윤번제로 호선하며,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됨.
-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 대행
-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시장·부군수가 임원 대리 가능

#### 라. 회의(제5조)

-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, 정기회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함.

#### 마. 사무처리(제6조)

-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「실무위원회」를 두며, 실무위원은 각 시·군의 기획담당 부서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실무위원이 역임함.
-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제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시·군과 협의하여 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

#### 바. 경비부담(제10조)

- 운영경비는 회의 주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분담 가능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발췌 1부.
-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(안) 1부.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69조(행정협의회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#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(안)

**제1조(목적)**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~ 경상북도 영천시 간 남북고속도로(남북 9축) 경유 인접 시·군은 상호교류 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고,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구 ~ 영천 간 「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」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**제2조(기능)**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.

1. 자치단체 간 공동관심사인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 및 공동협력 방안
2. 시·군정 각 분야별 시책의 공조
3. 기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양구 ~ 영천 간 남북9축 고속도로 경유 시·군으로 구성한다.

② 현재 계획상 고속도로 경유 시·군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, 인제군, 홍천군, 평창군, 정선군, 영월군, 경상북도 봉화군, 영양군, 청송군, 영천시로 구성하며, 계획의 변경 시 경유 시·군은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결로서 결정한다.

**제4조(운영)** ① 협의회는 양구군수, 인제군수, 홍천군수, 평창군수, 정선군수, 영월군수, 봉화군수, 영양군수, 청송군수, 영천시장으로 하고, 회장 및 부회장은 윤번제로 호선하며,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시장·부군수가 대리 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

**제6조(사무처리)**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「실무위원회」를 두며 실무위원은 각 시·군의 기획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②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실무위원으로 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제출 안전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시·군과 협의하여 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자문위원)**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**제8조(회의록 작성)** 협의회는 회의주관 자치단체에서는 회의록 등 의결·활동사항을 작성 관리 한다.

**제9조(협의사항 처리 등)**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.

**제10조(경비부담)**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경비는 회의주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만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 경비를 분담할 경우에는 상호간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.

**제11조(규약개정)** 이 규약은 협의회 회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.

**제12조(보칙)** 본 규약 이외에 사항은 협의회 합의에 따른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회칙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.